

한국형 망 중립성 논의의 맹점에 대한 비판과 대안

김재연(@visiondesigner, visiondesigner21@gmail.com)



서론

2011년 7월 1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통신3사(Network Provider, NP)가 한국 실정에 맞는 망 중립성 소위 제정을 제안했다. 요지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화하면서 통신사의 수익율은 정체된 반면에 트래픽은 폭증하고 그에 따라 망 증설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생태계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무임승차의 비용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¹

해당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첫 째, 망 중립성 원칙은 초기 인터넷의 설계에 관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의 고도화된 성장과 그에 따라 차별화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그에 따라 시장이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이며 반시장적이다.² 첫 째 논리가 망 중립성의 정의의 적실성(適實性)에 관한 것이라면 둘 째는 좀 더 경제적인 부분에 치중한 양면시장의 논리다. 양면시장은 시장 일면의 효용이 다른 일면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교차외부효과(cross-side network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적가격 측정, 시장지배 등에 관한 결정이 단면시장하고 차이가 난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의 경우도 망 사업자의 망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같은 양면시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 경우에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제작사나 콘텐츠 제공자도 망 사업자로부터 일종에 보조금을 받고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망 사업자의 비용을 분담할 만한 근거가 있다.³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부분의 해석은 망 중립성에 대한

¹ 강병준 외, "[망 중립성 해법 탐구]<1>한국형 망 중립성 원칙을 찾자", *전자신문*, 2011년 7월 9일.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7180059> 2011년 8월 7일 최종 접속. 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 CP)와의 관련 협상을 넘어서 통신 3사는 최근 제조사 측에도 공문 발송 위에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통신업계, 스마트TV 인터넷 대가 요구 추진(종합)", *연합뉴스*, 2011년 8월 5일.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8/05/0303000000AKR20110805081151017.HTML> 2011년 8월 7일 최종 접속.

² 국내 망중립성 규제 반대론자들에 의하여 자주 인용되는 크리스토퍼 유(Christopher S. Yoo) 교수의 논지가 다음의 정책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Christopher S. Yoo, "Network Neutrality or Internet Innovation?" *Telecommunications & Technology, Regulation* Spring, 2010.

³ 김도훈, "독점적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의 타당성 분석: 양면시장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2009), 11참조.

논의의 진행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도 한국형 망 중립성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망 중립성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파, 산업간 다툼에 소모될 것 없으며 초기 브로드밴드의 소위 라스트마일(last-mile) 이슈를 가지고 쟁점이 첨예했던 미국과 달리 무선망 관리를 중심으로 불거진 최근의 한국 스마트 생태계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해 망 중립성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이와 같은 망 사업자 위주의 공급 논리에 따른 한국형 망 중립성 논의에 대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 째 망 중립성 논의의 실체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논란이 실제로는 '소극적' 망 중립성과 '적극적' 망 중립성으로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찬반이 일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중 후자의 입장에서 본고는 망 중립성 원칙이 왜 인터넷의 발전에 주요했으며, 그리고 통신망의 고도화(intelligent network)와 같은 향후 과제에도 방해 요소가 아닌지를 밝힐 것이다. 둘째, 양면시장의 논리를 비롯한 경제적 혜택에 관해서는 양면시장 논리의 수용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의 위험성을 지적할 것이다. 특별히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망 사업자에 의한 실질적 규제 현상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여 반박하고자 한다. 셋 째,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미국과 한국의 망 중립성 원칙이 달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의 아키텍처의 기본 성격을 결정하는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이슈이며,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통신사측 주장의 기반인 관련 자료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이 취약하므로 논의의 시작이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비판할 것이다.

결론부에서는 정부에서 망 사업자의 공급자 위주의 논리를 벗어나서 어플리케이션 제작사, 콘텐츠 제공자, 제조사,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망 중립성 논의의 틀을 망 중립성에 기반을 둔 망 고도화의 원칙으로 제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망 사업자의 비용 부담 논리를 넘어서 인터넷 혁신과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한 전체 사회적 후생에 근거를 둔 망 중립성 규제 방안 실현할 명분과 근거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본론

콜롬비아 로스쿨의 팀 우(Timothy Wu) 교수에 의하면 제안된⁵ 망 중립성 정책 논의의 기술적 기반은 단대단 연결 주장(end-to-end arguments)이다. 이 주장은 실제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해당 단대단 연결 주장에 관한 논의를 제기한 제롬 살처(Jerome Saltzer), 데이비드 리드(David Reed), 데이비드 클라크(David Clark)는 1981⁶년과 1998⁷년에 두 번 관련 논문을 썼는데, 공학자

⁴ 김시소, “[망중립성 해법찾기3] 미국식 망중립성 한국에는 ‘맞지 않는 옷’”, *전자신문*, 2011년 7월 26일. <http://www.etnews.com/201107250126> 2011년 8월 7일 최종 접근.

⁵ 김성환, 이내찬, 김형찬, “망중립성의 배경 및 이론의 이해”,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5권 제1호(2008), 96 참조.

⁶ Jerome H. Saltzer, David P. Reed, and David D. Clark. “End-to-End Arguments in System Design.”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April 1981) pp. 509-512.

⁷ David P. Reed, Jerome H. Saltzer, and David D. Clark. “Comment on Active Networking and End-to-End Arguments.” *IEEE Network* 12, 3 (May/June 1998) pages 69-71.

출신인 스탠포드 로스쿨의 바바라 반 슈윙크(Babara Van Schewick) 교수는 이 두 논문에서 단대단 연결 주장에 대한 정의상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⁸ 1981년 논문의 단대단 연결 주장의 핵심은 패킷 전송의 정확성, 안정성에 있다. 망 중립성을 패킷에 대한 비차별(non-discrimination) 논리로 압축하는 것은 이 단대단 연결 주장에 근거한다. (소극적 망중립성) 그러나 1998년 논문의 단대단 연결 주장의 핵심은 다르다. 그것은 네트워크의 최상위 레이어의 엔드 호스트(end-host)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제한된 기능성(application-specific functionality)를 부여하고, 하위 레이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능성(general functionality)으로 한정지음으로써 망의 단기적 성능(short-term performance) 향상이나 비용 감소(cost reduction)보다는 장기적인 망의 진화성(network evolvability)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망 중립성이란 패킷 전송에 대한 비차별 논리를 넘어서서 인터넷 아키텍처의 기능 분담을 통해 저비용의 혁신이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제 환경(economic environment)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⁹ (적극적 망중립성)

이 같은 망 중립성의 기술적 배경과 그 배경의 혁신 생태계와의 연관성을 놓고 볼 때, 망 중립성이 인터넷의 초기 설계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은 1981년 논문에 근거한 것이다. 그것은 지난 인터넷 발달의 역사에 근거해 인터넷 아키텍처를 보다 면밀히 묘사한 1998년의 논문의 해석과 거리가 있다. 나아가, 또한, 1998년 논문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에는 망 중립성은 망의 고도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 QoS(Quality of Service)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 QoS가 실현되는 방법에 있어서 망 사업자 중심의 논리로 전개된 인터넷의 기본 아키텍처가 훼손되게 되어 그 결과 어플리케이션 제작, 콘텐츠 공급 등의 혁신하는데 드는 비용이 주어지는 경제적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망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망 중립성이 인터넷의 초기 단계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은 소극적 망 중립성과 적극적 망 중립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망의 고도화에 망 중립성이 반대한다는 논리는 적극적 망 중립성 논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⁰

동시에 양면시장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사, 콘텐츠 제공자 등 망 사업자 외의 스마트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이 교차 외부효과를 통해서 일종의 보조금을 통해 수혜를 누리는 경우가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망 사업자의 패킷 감시 기술(deep packet inspection) 등에 따른 가격 차별화 정책으로 인한 가치 교환(trade-off)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광의적 의미의 단대단 연결 주장에 기초한 망 중립성의 논의에서 보면, 기존의 인터넷 구조는 잠재적 혁신가가 다수이다.(하버드 로스쿨의 조나단 지트레인(Jonathan Zittrain) 교수에 따르면 그들이 e-mail부터 World Wide Web에 이르는 인터넷 혁신의 주역이었다고 한다.¹¹) 동시에 네트워크의 이용에 관한 통제 권한도 이용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에 반면하여 망 사업자가 네트워크의 이용을 통제하는 지능형 전화망(intelligent telephone network) 혹은 IP 멀티미디어 서브시스템(IP Multimedia Subsystem)에서는 전자에서는 잠재적 혁신가가 망

⁸ Babara Van Schewick, *Internet Architecture and Innovation*, Cambridge: The MIT Press, 2010.

⁹ Ibid., pp. 57-81.

¹⁰ Ibid., pp. 106-107

¹¹ Jonathan Zittrain, *The Future of the Internet and How to Stop I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사업자나 관련 사업자로 그 범위가 축소되며 후자에서는 자본의 여부에 따라 경쟁의 양상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나타난다.¹² 이 점은 첫 째 망 사업자의 혁신의 동기와 필요에 따라서 mVoIP 서비스 견제와 같이 다른 부분의 혁신이 저하될 수 있고(blocking) 동시에 그 같은 혁신의 저하가 망 사업자의 혁신의 동기와 그 혁신을 통한 혜택의 분배가 전체 사회 후생의 최적화(social optimum)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의 직접적 후생 증대에 어플리케이션의 저비용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혁신이 미치는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우리는 정보재의 특수성과 인터넷의 미래가 지식 경제 사회의 개인과 사회의 자유와 평등에 미치는 영향, 즉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지배하고 있는 통신시장은 경쟁의 양상이 존재한다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지배적으로 삼분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다른 공급자들이 통신시장에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정보재의 거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향상시킨다는 표현의 자유시장론(marketplace of ideas)의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과점 시장을 통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획득되기 어렵다고 한다.¹³ 정부가 방임주의 정책에 따라 비간섭을 표명하면, 실질적으로는 사적 규제자인 통신사에 의해서 통신사의 확인에 의한 표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망 중립성이 지켜지지 못할 때 혁신의 침해뿐 아니라 표현의 침해까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 망 중립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 브로드밴드 제공사인 컴캐스트(Comcast)의 애프터다운라이트스트리트(AfterDowningStreet)와

미트위드신디(MeetWithCindy)의 이메일 차단 사례를 보면 그들은 모두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였다¹⁴ 따라서 현재 이 같은 망 중립성 논란이 21세기의 핵심적 자원인 정보재의 생산과 분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망 중립성 규제는 그 같은 공급자의 비용 부담 논리에 숨겨진 과점적 통신 시장이 인터넷 아키텍처의 상위층까지 결합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혁신과 표현의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¹⁵

최종적으로 각국의 사정이 다르고, 망 중립성이 미국의 정파 논쟁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 째 각국의 사정은 다르나 공통된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표현과 혁신이 일어난다는 사실의 인정이 필요하며, 상기에 논의된 것처럼 망 중립성은 인터넷의 기본적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라는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아가 카카오톡, 마이피플까지 통신사들에 의해서 견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자체 어플리케이션인 페이스타임은 관용되고 통신사들도 유사한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내보이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들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국내의 망 중립성 논쟁의 핵심인 비용 구조의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대 통신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매출 정체, 트래픽 증가, 망 증설 비용만 논하고 있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분, 망 설비 첨단화에 따른 증설 비용 감소분, 통신사의 지출 내역 중 마케팅이나 망의 중복 투자 등 양면시장에 논리에서 지적된

¹² Babara Van Schewick, *Internet Architecture and Innovation*, Cambridge: The MIT Press, 2010. p.390

¹³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p. 30-34.

¹⁴ Dawn C. Nunziato, *Virtual Freedom: Net Neutrality and Free Speech in the Internet Age*, Stanford: Stanford Law Books, 2009.

¹⁵ Timothy Wu, *The Master Switch: The Rise and Fall of Information Empires*, Knopf. 2010.

소비자의 후생 증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 자료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¹⁶ 덧붙여 인구가 고도로 밀집된 국내 상황에서 무제한요금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결과 집중 사용 시간(peak time)의 집중 사용 장소(peak space)에서 트래픽이 과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의 책임도 일부 있음을 지을 수 없다.¹⁷ 따라서 이와 같은 통신사들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이 부족한 태도는 사실상 한국의 망 중립성 원칙을 세우기 앞서 필요한 면밀한 자료 검토의 과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유선망의 상대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통신사간의 비교적 경쟁이 활발하다는 점, 최근 무선망에서 과다한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따른 우리식 망 중립성 논의의 주장은 논의의 기본 전제인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

결론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간여할 수 있고, 그것이 시장의 진화를 위해서도 효과적이라는 기본적 근거는 과점 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간섭하였을 때 통신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사회적 후생을 확대시킨 카터폰 원리(Carterfone Principle)와 같은 사례들이다.¹⁸ 팀 우가 『마스터 스위치』(The Master Switch)가 20세기 통신사의 개방과 독점의 순환사를 통해 강조한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정부냐 시장이냐에 있지 않고, 과점 기업(big business) 역시 시장의 혁신을 저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2001년에 발표한 『아이디어들의 미래』(The Future of Ideas)에도 같은 논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인터넷 규제의 핵심은 시장이냐 정부냐가 아니라 자유냐 아니면 통제이냐 이다.¹⁹ 따라서 개인의 창발성을 바탕으로 지식 경제 사회를 이끌어어나가기 위해서도 정부가 망 중립성 규제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간섭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더욱이 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와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분할되어²⁰ 기간통신사업법(common carriage

¹⁶ 홍진표, “[이슈와 전망] 이통사 위협하는 m-VoIP”, *C/지/텔타임스*, 2011년 7월 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9&aid=0002076155> 2011년 8월 7일 최종 접근.

¹⁷ “LG U+ 불통, ‘이통 트래픽 폭발’ 신호탄?”, *연합뉴스*, 2011년 8월 2일.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891726&ctg=1601&tm=n_sokbo 2011년 8월 7일 최종 접근.

¹⁸ Michael T Hoeker, “From Carterfone To The iPhone : Consumer Choice In The Wireless World”, *Communications*(2008).

¹⁹ Lawrence Lessig. *The Future of Ideas*. New York: Random House, 2001.

²⁰ 관련된 유명한 사건으로는 2005년의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et al. v. Brand X Internet Services et al.*, 545 U.S. 967이 있다. 이 사건에서 소규모 ISP인 Brand X가 케이블 회사들을 1996년에 제정된 전화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에 따라서 기간통신망으로 법적으로 정의하여 망 개방을 하여 주기를 원했으나, 케이블 회사들은 자신들이 단순 데이터 전송 외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보 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로 법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결과는 앞의 2005년 미대법원 판결에 의해 6-3으로 케이블 회사들의 승소로 돌아갔다.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Cable_%26_Telecommunications_Association_v._Brand_X_Internet_Services 2011년 8월 7일 최종 접근.

law)의 추가 입법이 망 중립성 규제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²¹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망 사업자들이 기간통신망 사업자로 규제되고 있는 특수한 사례다.²² 따라서 진정으로 '한국형'을 논하고자 한다면 타국보다 형식상으로는 규제의 근거를 더욱 타당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추가적인 명분도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의 전자상거래 챕터에는 미국 FCC의 망중립성 원칙을 옮겨놓은 망중립성 조항이 수용되어 있다.²³ 비록 협정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내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기는 하지만 국제공조의 차원에서 망중립성을 견지할 만한 명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망 기능의 분할을 통해 저비용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혁신을 이끌고 그 혁신을 통해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autonomous) 네트워크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망 중립성 원칙의 수호를 위해²⁴ 정부가 간여해야 할 만한 근거도 명분도 충분하다. 이제 남은 일은 앞서 강조한 것처럼 망 고도화와 망 중립성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통신사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망 중립성의 논리 하에서 망 고도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단기적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에 인터넷 아키텍처의 진화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원칙을 갖추는 것이다.(그리고 그 것을 사회 전체의 후생 최적화를 위한 합리적인 망 관리로 정의해야 한다. 현재의 네트워크 혼잡, QoS, 유해, 불법 콘텐츠 검열 등을 명시한 합리적인 망 관리는 광범위한 것뿐 아니라, 규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형식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망 중립성 관련 법안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 입법 조치를 가하거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이통사들이 주장하는 사후 규제안은 앞서 논의한 인터넷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보재의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공공적 성격을 간과하는 소치다.²⁵)

동시에 그 같은 원칙은 첫 째 1인 기업, 벤처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이라는 산업적 논리에 따라 중요하다. 둘째 그보다 더 크게 저비용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층의 혁신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증대시킨다는 사회적 필요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망 중립성 규제 원칙은 인터넷 아키텍처를 지키기 위한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노력이다. 과점 시장의 황포를 막아 시장의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우리 정부는 그 책임을 실현할 동기와 그 근거와 명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 과거 산업 정책 논리뿐 아니라 사회 전체 후생의 최적화도

²¹ Dawn C. Nunziato, *Virtual Freedom: Net Neutrality and Free Speech in the Internet Age*, Stanford: Stanford Law Books, 2009.

²²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각 호를 참조할 것. 전신, 전화, 인터넷 접속, 주파수 할당,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모두 기간통신역무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대통령령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6조에 인터넷전화에 관한 부분도 기간통신역무로 규정이 되어 있다.

²³ 한미 FTA 협정문의 제 15.7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참조. 2009년 10월 22일 미국의 FCC가 광대역망 정책을 공시하기 위한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2K57.pdf 2011년 8월 7일 최종 접근.

²⁴ Yochai Benkler,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Yale University Press, 2006.

²⁵ 이준호, "한국형 망 중립성, 정부규제 최소화하고 자율규제로.", *전자신문*, 2011년 8월 2일.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8010181&mc=m_014_00004 2011년 8월 7일 최종 접근.

감안하여 관련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²⁶

²⁶ 윤종수, “인터넷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활성화 방안.”, *한국법학원*, 2010. p.34 참조.